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6. . . (제 회)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외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동반가족 범위에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임.

또한, 각 신청대상별 신청서 첨부서류 명시, 정부 지원의 상세내용 명시, 신청기간 및 통지기간 조정, 위탁업무 명시 등 사할린동포 지원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명시(안 제2조의3제3항 개정)

1) 정부가 시행하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내용 중 일부만 시행령에 명시되고 있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한 정착 지원 요구가 높고 이를 반영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지원 이

외에 △국적판정 등 국적취득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 정착 지원 △법률적·행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등 법률·행정 지원 등을 추가 규정함.

3) 사할린동포 또는 그 동반가족이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내 입국 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며,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의 법적 기반이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기간 조정(안 제3조 개정)

1)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대상자의 국내 입국 및 초기 정착 관련 절차의 빠른 진행, 영주귀국 대상자 선정 후 사할린 등 해외 거주 영주귀국 대상자가 입국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 기간을 앞당길 필요가 있음.

2) 접수 기간을 기존의 3월 2일부터 4월 30일에서 2월 1일부터 3월 31일로 조정하기 위해 접수 종료 시점을 4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규정함.

3)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대상자의 국내 입국 및 초기 정착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 등 해외 거주 사할린동포 또는 그 동반가족이 영주귀국 대상자 선정된 후 입국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대상별 신청서 첨부서류 규정(안 제3조 개정)

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영주귀국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가 제출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존 신청 대상별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중 일부인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할린동포에 대해서는 출생증명서 이외에 제적등본, 강제동원증명서, 박노학 명부, 영주귀국 확인서, 일시모국방문 확인서 등을 제출 가능한 첨부서류로 규정함. 동반가족에 대해서는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이외에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세 성명 변경 확인서 등을 제출 가능한 첨부서류로 규정함.

3) 지원 신청자가 제출 가능한 첨부서류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원 여부 결정 통지 시점 조정(안 제4조 개정)

1) 신청서 접수기간 종료시점이 1개월 앞당겨지는 것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통지 시점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청인에게 7월 31일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1개월 앞당겨 6월 30일까지 통지하도록 함.

3) 신청인이 신청 접수 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속히 지원 여부 결정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위탁 업무의 내용 명시(안 제5조 개정)

- 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업무 위탁의 범위를 실제 위탁 업무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기존 위탁 업무인 △초청 방문사업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여부 결정 통지 이외에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국적판정 등 국적취득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 정착 지원 △지원 신청 철회를 추가함.
- 3) 대한적십자사가 위탁받는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할린동포 지원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지원
2. 「국적법」 제20조에 따른 국적판정 등 국적취득 지원
3. 대한민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 정착 지원
4. 법률적·행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조력 제공 등 법률·행정 지원
5. 그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사할린동포 또는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할린동포와”를 “사할린동포 또는”으로, “4월 30일”을 “3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출생증명서”를 “출생증명서, 제적등본, 강제동원증명서, 박노학 명부, 영주귀국 확인서, 일시모국방문 확인서”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동반가족:”을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출생증명서”를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세 성명 변경 확인서(출생증명서에 기재된 1세의

성명이 사할린동포를 증명하는 서류와 다를 경우에 제출한다)”로, “배우자(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임”을 “배우자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세호의 모든 서류

- 1) 사망한 사할린동포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할린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사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세 성명 변경 확인서(출생증명서에 기재된 1세의 성명이 사할린동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다를 경우에 제출한다) 등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세호의 모든 서류

- 1)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할린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사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 제출한다)
- 3)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자녀 및 그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직계비속 1

명과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제3항 중 “7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국적판정 등 국적취득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2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대한민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 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
7. 제4조의2에 따른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영은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3(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② (생략)	제2조의3(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원을 말한다.	③ ----- ----- 다음 각 호----- ----- --.
<신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지원
<신설>	2. 「국적법」 제20조에 따른 국적판정 등 국적취득 지원
<신설>	3. 대한민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 정착 지원
<신설>	4. 법률적·행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조력 제공 등 법률·행정 지원
<신설>	5. 그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사할린동포 또는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u>사할린 동포와</u>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는 연도의 4월 30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할린동포: <u>출생증명서</u>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u>출생증명서</u> 등 사할린	제3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 ----- ----- ----- ----- 3월 31일 ----- ----- ----- ----- ----- ----- ----- ----- ----- ----- 1. ----- ----- 가. ----- <u>출생증명서</u>, <u>제적등본</u>, <u>강제동원증명서</u>, <u>박노학 명부</u>, <u>영주귀국 확인서</u>, <u>일시모국방문 확인서</u> ----- ----- 나.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동포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세 성명 변경 확인서(출생증명서에 기재된 1세의 성명이 사할린동포를 증명하는 서류와 다를 경우에 제출한다) --- 배우자임----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세호의 모든 서류 1) 사망한 사할린동포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할린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세 성명 변경 확인서(출생증명서에 기재된 1세의 성명이 사할린동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다를 경우에 제출한다) 등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		<신 설> 2. (생 략)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등) ① · ② (생 략)	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세호의 모든 서류 1)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할린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 제출한다) 3)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자녀 및 그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	--	--	---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해의 <u>7월 31일까지</u>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 ----- <u>6월 30일</u> ----- ----- -----.
④·⑤ (생 략) 제5조(업무의 위탁)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업무의 위탁) ----- ----- ----- -----.
<신 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에 관한 업무
<신 설>	2. 제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국적판정 등 국적취득 지원에 관한 업무
<신 설>	3. 제2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대한민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 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
1. ~ 3. (생 략)	4. ~ 6.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신 설>	7. 제4조의2에 따른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에 관한 업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연 락 처	(032) 585 - 3288